

2편 학칙

제1장 학칙

제2장 학사규정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교육 이념 및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신학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국가 및 세계복음화와 교회 발전에 헌신하는 신학자와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5)

제2조(명칭) 본 대학원대학교는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라 한다.
(신설 1999.3.1)

제 2 장 과정 및 인원

제3조(과정) 본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01. 3.1, 2003.10.1, 2005.12.5)

제4조(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1, 2001.3.1, 2003.3.1, 2003.10.1, 2004.11.15, 2005.12.5, 2008.12.08)

제5조(학위)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1999.3.1, 2001.3.1, 2003.10.1, 2005.12.5, 2011.9.19, 신설 2014.9.1)

1. 문학석사 (M.A.)
2. 목회학석사 (M.Div.)
3. 신학석사 (Th.M.)
4. 일반신학석사 (M.T.S.)
5. 철학박사 (Ph.D.)
6. 교육학석사 (M.Ed.)
7. 예배음악석사 (M.W.C.M.) (신설 2014.9.1. 개정 2015.3.1)

제6조(전공설치) ① 석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신설 1999.3.1, 개정 2004.11.15, 2005.12.5, 2006.12.5, 2011.9.19, 신설 2014.9.1., 2016.10.1)

1. 구약학 전공
2. 신약학 전공

3. 조직신학 전공
 4. 교회사 전공
 5. 선교학 전공
 6. 실천신학 전공
 7. 기독교교육학 전공
 8. 기독교상담학 전공
 9. 통합신학연구 전공
 10. 교육학 전공
 11. (삭제 2018.2.26.)
 12. 예배음악전공 (신설 2014.9.1., 개정 2018.2.26.)
 13. 기독교영성 전공 (신설 2016.10.1.)
- ② 부전공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9.3.1, 개정 2006.12.5)
- ③ 박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신설 2011.9.19, 개정 2013.9.30)
1. (삭제 2018.2.26.)
 2. (삭제 2018.2.26.)
 3. (삭제 2018.2.26.)
 4. 기독교상담학 전공
 5. (삭제 2018.2.26.)
 6. 신학 전공

제 3 장 입 학

제7조(입학시기) 본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본교의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

1. 문학석사, 목회학석사, 일반신학석사, 교육학석사, 예배음악석사(개정 2005.12.5, 2011.9.19, 2013.9.30, 신설 2014.9.1, 개정 2015.3.1)
 -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각 전공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1999.3.1, 2005.12.5)
 -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3.9.30)
 - 다. 목회학석사과정은 목회의 소명이 분명한 자 (개정 1999.3.1)

라. 예배음악석사과정은 오디션을 통과한 자(신설 2014.9.1, 개정 2015.3.1)

2. 신학석사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각 전공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1999.3.1, 2005.12.5)

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9.3.1, 2013.9.30)

3. 철학박사 (신설 2005.12.5)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각 전공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계열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6.12.5, 2013.9.30)

제9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9.30)

② (삭제 2013.9.30)

③ (삭제 2013.9.30)

제10조(지원절차) 본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재·편입학 포함)을 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5)

제11조(정원외학생의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하는 정원외 입학기준을 충족시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한하여 정원외 입학으로 선발한다. 정원외 입학은 현지지도자 양성 장학금(TSMS) 전형과, 외국인전형 및 Expat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8.12.08, 2011.9.19, 2013.9.30)

② 기타 세부사항은 학사규정 및 전략적선교장학생(TSMS) 프로그램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5, 2013.9.30)

제12조(입학제한)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조교 제외)은 원칙적으로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수학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제13조(편입학) ① 본교는 정원 내에서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적 대학원에서의 징계제적자인 경우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5)

② 편입생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본

교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6.12.5)

제14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으며, 학사경고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1학기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01.3.1, 2006.12.5, 2010.12.7., 2011.11.28., 2020.3.1.)

② 재입학자는 제적 이전의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입학시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5)

③ (삭제 2020.3.1)

④ (삭제 2020.3.1)

제 4 장 수업연한, 학점, 교과과정

제 1 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문학석사(M.A.)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일반신학석사(M.T.S.)과정, 교육학석사(M.Ed.)과정, 예배음악석사(M.W.C.M)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목회학석사(M.Div.)과정, 철학박사(Ph.D)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되, 학생의 수학능력에 따라 석사과정은 최대 2학기, 박사과정은 최대 1학기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Expat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재학연한까지 늘일 수 있다. (개정 1999.3.1, 2001.3.1, 2003.3.1, 2003.10.1, 2005.12.5, 2011.9.19, 2012.8.20., 2015.3.1., 2018.2.26.)

제15조의2(재학연한) 문학석사(M.A.)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일반신학석사(M.T.S.)과정, 교육학석사(M.Ed.)과정, 예배음악석사(M.W.C.M)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목회학석사(M.Div.)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철학박사(Ph.D.)과정은 신학전공은 5년, 기독교상담학 전공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학생은 논문을 포함한 학위과정을 재학연한 내에 마쳐야 한다. 단, Expat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각 과정의 재학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3.1, 개정 2003.10.1, 2005.12.5, 2011.9.19., 2015.3.1., 2018.2.26., 2021.3.1)

제16조(취득학점) ①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 2013.9.30., 2018.2.26.)

1. 문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기독교교육학	45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45학점 또는 46학점(논문작성시)	2013-2017 커리큘럼
기독교상담학	47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45학점 또는 46학점(논문작성시)	2011-2017 커리큘럼

(개정 1999.3.1., 2004.11.15, 2005.12.5, 2008.12.08, 2009.11.23., 2013.9.30., 2018.2.26.)

2. 목회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 없음)	85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95학점	2008-2017 커리큘럼

(개정 2005.3.1., 2008.12.08., 2018.2.26.)

3. 신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통합신학연구	30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34학점	1998-2017 커리큘럼
기독교영성	29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27학점 (논문작성시 29학점)	2017 커리큘럼

(개정 2005.12.5,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6.10.1., 2018.2.26.)

4. 일반신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 없음)	38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42학점	2010-2017 커리큘럼

(신설 2005.12.5, 개정 2009.11.23., 2018.2.26.)

5. 철학박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기독교상담학	66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65학점	2009-2017 커리큘럼 (단, 신학관련 석사학위 미소지자는 입학후 처음 1년간 신학 24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신학	23학점과	2021 커리큘럼 이후

	5유닛	
	25학점과 6유닛	2015 -2020 커리큘럼
	28학점과 6유닛	2014 커리큘럼 (2013 이전 학생은 2014 커리큘럼으로 전환)

(신설 2005.12.5, 개정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3.9.30,
2015.3.1., 2018.2.26., 2021.3.1.)

6. 교육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없음)	36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37학점 (논문작성시 38학점)	2014-2017 커리큘럼

(신설 2011.11.28, 개정 2013.9.30, 2015.3.1., 2018.2.26.)

7. 예배음악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없음)	45학점	2015 커리큘럼 이후

(신설 2015.3.1.)

②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의 취득학점은 각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3.1.)

제16조의 2(학점인정) 학생이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3.9.30)

제 2 절 교육과정

제17조(교육과정) 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교과목의 개설) ① 각 전공분야의 학과장은 교과목 신설 요청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1., 2018.2.26.)

② 각 과정별 교과목에 대한 개설 최소수강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9.30)

제18조의 2(교과의 이수단위)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13.9.30)

제19조 (삭제 2006.12.5.)

제19조의 2(수업) ① 수업은 정규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2.26., 개정 2021.3.1)

② (삭제 2021.3.1)

③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규정 및 원격수업에 관한 시행세칙에 정한다. (신설 2020.3.1.)

제2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조개정 2006.12.5, 2013.9.30)

제20조의2(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의 수업은 학기 개시일 전후에 개강 할 수 있다.

1.봄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가을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개정 2013.12.31)

③ 학기 중 방학기간에 계절학기(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개정 2013.12.00)

④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학처장은 방학기간에 개설되는 집중과정(모듈라 수업)에 대하여 당해학기 또는 다음 학기로 지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3.8.31, 개정 2013.12.31., 2018.2.26.)

⑤(신설 2013.9.30, 개정 2013.12.31., 삭제 2018.2.26.)

제20조의3(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일요일

3. 하계 및 동계방학

② 임시 공휴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제20조의4(교원의 강의책임시간) 본교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3.9.30., 개정 2018.2.26.)

제21조(학업평가) ① 학업성적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3.1, 2013.9.30., 2014.9.1., 2018.2.26.)

등급	평점	점수
A	4.0	95 - 100
A-	3.7	90 - 95미만
B+	3.3	87 - 90미만
B	3.0	84 - 87미만
B-	2.7	80 - 84미만
C+	2.3	77 - 80미만
C	2.0	74 - 77미만
C-	1.7	70 - 74미만
D+	1.3	65 - 70미만
D	1.0	60 - 65미만
F	0.0	60점 미만
P	불계	합격
NP	불계	불합격
IP	In Progress - 논문 과목에 한함 (불계)	
W	Withdrawal (불계)	
I	Incomplete (불계)	
GR	Grade Replaced (성적대체, 불계)	

② (삭제 2013.9.30.)

③ P/NP는 해당 학생의 과정에 근거하여 학칙 제22조에 있는 이수인정학점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신설 2018.2.26.)

제22조(이수인정학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 실시 시간의 4분의 3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석사과정은 D이상, 철학박사과정은 B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단,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은 목회학석사(M.Div.)과정은
2.0이상, 문학석사(M.A.)과정과 일반신학석사(M.T.S.)과정, 교육학석사(M.Ed.)과정, 예배
음악석사과정(M.W.C.M.)은 2.5이상, 신학석사(Th.M.)과정은 3.0이상, 철학박사(Ph.D)
과정은 3.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3.1, 2001.3.1, 2003.3.1, 2003.10.1,
2005.12.5,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3.9.30., 2015.3.1.,
2018.2.26.)

제23조(학점취득제한) 각 과정별 전공분야의 취득학점은 매 학기 아래 규정된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점추가등록비를 내고 최대 추가 2학점까지(목회학석사과정은 최대 추가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03.10.1., 2006.12.5., 2013.9.30., 2014.9.1., 2018.2.26.)

1. 문학석사

전 공	학점취득제한	비 고
기독교교육학	14학점	2010 커리큘럼 이후
기독교상담학	14학점	2009 커리큘럼 이후

(개정 2003.3.1., 2004.11.15., 2005.12.5., 2009.11.23., 2018.2.26.)

2. 목회학석사

전 공	학점취득제한	비 고
(전공 없음)	17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18학점	1998-2017 커리큘럼

(개정 1999.3.1., 2003.3.1., 2018.2.26.)

3. 신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통합신학연구	9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10학점	1998-2017 커리큘럼
기독교영성	9학점	2017 커리큘럼 이후

(개정 2001.3.1., 2003.3.1., 2003.10.1., 2005.12.5., 2008.12.08., 2018.2.26.)

4. 일반신학석사: 12학점 (신설 2005.12.5.)

5. 철학박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기독교상담학	12학점	2009 커리큘럼 이후
신학	10학점	2014 커리큘럼 이후

(신설 2005.12.5., 개정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3.9.30., 2018.2.26.)

6. 교육학석사: 11학점 (신설 2011.11.28., 개정 2014.9.1.)

7. 예배음악석사: 14학점 (신설 2015.3.1.)

제24조(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학과장에 의해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1.)

② 박사과정의 경우 별도로 정한 신학기초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2.5)

제25조(과정이수 및 인정시기) (개정 1999.3.1, 2005.12.5, 2013.9.30., 2015.3.1., 삭제 2018.2.26.)

제26조(사역실습) 본교 학생의 사역실습은 학사규정을 따른다. (신설 1999.3.1, 개정 2001.3.1, 2006.12.5., 2013.9.30., 2018.2.26.)

제27조(학사경고) 학사규정에서 정한 학점평균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사경고 처리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9.3.1, 개정 2001.3.1)

제27조의2(부정행위자 징계) (조삭제 2017.5.8)

제 5 장 등록 · 휴학 · 복학 · 제적 · 자퇴

제28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금 일체를 납입함을 말한다.) (신설 2003.3.1)

②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3.1., 2020.3.1)

③ 수업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

④ (삭제 2020.3.1)

제28조의2(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5, 2013.9.30)

제29조(등록금의 반환) ① 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5)

②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신설 2006.12.5., 개정 2017.5.8)

제30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시기 내에 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 2001.3.1, 2013.9.30)

② (삭제 2013.9.30)

③ (삭제 2013.9.30)

- ④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06.12.5., 2013.9.30)

제31조(복학) ①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 소멸 시에는 해당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1.3.1)

-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제32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이를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개정 1999.3.1)
3. 학칙이 정하는 학위취득 출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개정 1999.3.1, 2001.3.1, 2005.12.5., 2013.9.30., 2018.2.26.)
4. 타교에 입학하여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신설 1999.3.1, 개정 2005.12.5.)
5. (삭제 2017.1.1)
6.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 (목회학석사학위과정은 3회 이상) (신설 1999.3.1, 개정 2006.12.5.)
7. (삭제 2017.1.1)
8.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을 결의한 자 (신설 1999.3.1, 개정 2006.12.5., 개정 2017.1.1)
9. (삭제 2017.1.1)

제3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 2013.9.30)

제34조(과정변경) ① 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 교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9.3.1, 개정 2001.3.1, 2006.12.5.)

- ② 전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6.12.5.)

제 6 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5조(각종 시험, 논문 및 학위수여)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또는 성경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출시기, 심사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5.12.5.,

2018.2.26.)

제35조의2(수료) ① 학생이 과정별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이수학점과 졸업평점평균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2020.3.1.)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학위수여일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13.9.30)

③ (삭제 2013.9.30.)

④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재학연한내에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박사과정위원회 또는 교학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논문작성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3.1.)

제35조의3(졸업) ① 과정별 졸업기준은 별표2과 같다. (개정 2013.9.30., 2014.9.1., 2015.3.1., 2016.10.1., 2017.2.1)

②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6.12.5)

제35조의4(학위수여) ①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는 학년도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 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따른다. (조신설 2006.12.5)

제35조의5(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대학원 석·박사학위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조신설 2006.12.5, 개정 2015.3.1)

제35조의6(학위수여의 취소)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개정 2010.10.1)

제 7 장 공개강좌, 청강, 선이수수강, 계절학기,

연구생 및 교환학생

- 제36조(공개강좌)** ① 본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원격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 ② 공개강좌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역과 영성생활을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
-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6조의2(청강)** 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1.3.1)
- ② 청강은 신학학위 또는 학점의 취득없이 본교의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01.3.1)
- ③ 담당교수의 허가에 의해 청강할 수 있다. (신설 2001.3.1)
- ④ 본교 재학생이 아닌 청강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3.1)

제36조의3(선이수수강) (삭제 2013.9.30)

- 제36조의4(계절학기)** ①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 계절학기에 9학점 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1)
- ②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6.1)

- 제37조(연구생)** ① 본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신설 1999.3.1)
- ②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따로 정한다. (신설 1999.3.1)
-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9.3.1)

- 제38조(교환학생)** ① 총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01.3.1)
- ② 교환학생은 국외 신학대학원에 정규 등록된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라야 한다. (신설 2001.3.1)
- ③ 교환학생은 정원 외로 모집한다. (신설 2001.3.1)
- ④ 교환학생에 관한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3.1)

제38조의 2(학점교류생) ① 국내외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학처장의 승인 하에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생은 소속대학원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 본교에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제 8 장 장학금 및 상벌

제39조(학생의 의무) 본교의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총장의 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40조(장학금) ①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또는 세부사항에서 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18.8.20.)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5)

제41조(징계) ① 본교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준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3.3.1., 2017.5.8)

② (삭제 2017.5.8)

③ (삭제 2017.5.8)

제41조의2(포상)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준수규정에 의한다.

(조신설 2006.12.5)

제 9 장 학생활동

제42조(학생활동) 본교 재학생의 모든 활동은 학교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9.3.1)

제42조의2(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조신설 2006.12.5)

제42조의3(학생회 등) 학생은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단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06.12.5)

제42조의4(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①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은 교육과 연관된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희롱)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6.12.5)

제 10 장 직제 및 위원회

제43조(직제) 본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조개정 2006.12.5)

제44조(지도교수) ① 본교의 교원 중에서 각 과정 및 과정의 전공마다 학사 및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2005.12.5, 2006.12.5, 2013.9.30)

② 지도교수는 해당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2005.12.5)

제45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3.1., 2005.12.5., 2016.5.1)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6.12.5., 2016.5.1)

제45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조신설 2006.12.5)

제45조의3(위원회)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제45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조신설 2010.12.7)

제46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5.1)

② 평의원회의 결정은 다른 모든 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되며 최종적이다.(신설 2006.12.5)

제4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3.1., 2016.5.1)

제48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작성한다. (신설 2001.3.1.)

제 11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49조(부속기관)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1, 2011.3.1)

1. 도서관 (개정 2001.3.1)

2. 학생생활관

제50조(부설기관)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3.1, 2001.3.1, 2006.12.5)

1. 선교 연구원 (개정 1999.3.1)

2. 성서학 연구센터 (개정 1999.3.1, 2005.12.5)

3. 영성형성과 실천신학 센터 (개정 1999.3.1., 2018.8.20)

4. 상담센터 (신설 2003.3.1, 개정 2005.12.5)

5. (삭제 2020.3.1)

6. 한국이슬람연구소 (신설 2006.12.5, 개정 2009.11.23)

7. 평생교육원 (신설 2006.12.5)

8. 기독교교육센터 (신설 2008.12.08)

9.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1.11.28)

제 12 장 보 칙

제51조(학칙 변경) ①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조신설 2006.12.5, 2012.8.20)

제52조(시행규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6.12.5)

제53조(준용) 이 학칙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 준한다. (조신설 2006.12.5)

제54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09.11.23)

부 칙

①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시행일자)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절차) 본 학칙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개정안 사전 공고,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 의해 본 학칙은 개정되며 총장에 의해 선포된다.

③ 개정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2장제4조의 정원은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2장제4조의 정원은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2장제4조의 정원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8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취득학점)에서 2018 이전 커리큘럼을 따르는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8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5조의2(수료)에서 2018 이전 커리큘럼을 따르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논문지도Ⅱ를 제외한 모든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8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취득학점)에서 2016 이전 커리큘럼을 따르는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고, 2017 커리큘럼을 따르는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은 86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단, 제4장제15조의2 재학연한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학원 정원표

(개정 2001.3.1, 2003.3.1, 2003.10.1, 2004.11.15, 2005.12.5, 2008.12.08,
2011.9.19, 2013.9.30, 2015.3.1, 2016.3.1, 2016.10.1, 2017.5.8)

과정	계열	입학정원	학위구분	학위	전공	비고
석사	인문	130	전문학위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	2년과정
			전문학위		기독교상담학	
			전문학위	목회학석사		3년과정
			전문학위	신학석사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통합신학연구, 성경과사역, 기독교영성	2년과정
			전문학위	일반신학석사		2년과정
			전문학위	교육학석사		2년과정
			전문학위	예배음악석사		2년과정
박사	인문	8	학술학위	철학박사	신학, 기독교상담학	3년과정
합계	인문	138	7개 학위, 2개 과정			

(별표 2)

과정별 졸업기준

(신설 2014.9.1., 개정 2014.9.1., 2015.02.02., 2016.10.1., 2017.2.1., 2018.2.26., 2019.3.1., 2021.3.1.)

학위과정		졸업요건	이수학점	평점평균(GPA)	그 외 요건
목회학석사			85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0 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교학교수련회) 이수 2. 성경시험 통과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 전공		45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교학교수련회) 이수 2.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 3학기 이수 3. 종합시험 통과
	기독교상담학 전공		47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교학교수련회) 이수 2. 종합시험 통과
교육학석사			36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 2학기 이수 2. 종합시험 통과
일반신학석사			38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교학교수련회) 이수 2. 성경시험 통과
예배음악석사			45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교학교수련회) 이수 2. 성경시험 통과
신학석사과정		30학점 (기독교영성 의 경우 29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1. 종합시험 통과
철학박사 과정	영어과정	23학점 및 Guided Research 5 Units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1. 종합시험 및 논문 통과
	한국어과정 -기독교상담 학전공	66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1. 종합시험 및 논문 통과 2. 인턴십 2학기 이수 인턴십 슈퍼비전 2학기 이수

* 상기 이수학점은 최종 커리큘럼의 이수학점이며, 다른 커리큘럼의 이수학점은 제16조(취득학점)에 따른다.